

상임이사회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소액 기부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이사회 의결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 출연금액 기준*을 상향하고자 상임이사회규정 제5조에 의거 제안함

* (현재) 천만원 이하 출자·출연 → (변경) 기부금품 출연은 오천만원 이하

2. 주요 개정 내용

「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기부금품은 오천만원 이하일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함 (안 제5조제1항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2년 4월 3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기획조정실
- 담당자(이메일) : psh0111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634
- 팩스번호 : 051-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신속한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 기부금 집행

첨부 상임이사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.

[첨부]

상임이사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5조 (의결사항) ①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는 보증·융자업무 또는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~ 5. (생략) 6. 천만원 이하의 출자·출연. 다만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업체에 대한 출자전환은 제외한다 7. ~ 8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5조 (의결사항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일천만원(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은 오천만원) 이하의</u> 출자·출연. 다만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업체에 대한 출자전환은 제외한다. 7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	소액 기부금품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액기준 상향
	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.	